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
------	-----

2022. 9.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9.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안 제9조제3항)
- 나.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안 제14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가하고,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제출됨.

나.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개요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¹⁾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심의회는 당연직 내부위원(공무원 4명), 외부위원(시의원 4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6명)으로 구성되며, 학술용역 상정 안전에 따라 그 타당성 및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용역을 일반·기술·학술연구용역으로 구분하고 학술연구용역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음.

- 학술용역 심의는 환경, 건설·안전, 교통, 행정 등의 연구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위촉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편임.

< 분야별 위원 구성 >

(단위 : 명/건)

구분	계	환 경	건설 안전	교 통	행 정	도시 계획	문화 관광	경 제	주택 건축	아동 청년 교육	여 성	보건 의료	재 정	복 지
위원	38	4	4	4	4	3	3	3	3	2	2	2	2	2
심의 건수	209	38	30	18	18	18	17	16	14	14	10	8	4	4

- 심의회는 정기회의(9월)와 수시회의(3월~11월)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함.
- 최근 3년간 시정현안 문제 해결 또는 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해 215건의 학술용역을 심사하여 150건을 적정과제로 채택함.

< 최근 3년 학술용역 심의결과 >

구분	계			2020			2021			2022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심의 결과	215	150	65	119	79	40	90	66	24	6	5	1
비율 (%)	100	70	30	100	66	34	100	73	27	100	83	17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2020.8).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서울시 이행여부)
①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감증을 거치도록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미이행)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이행)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인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이행)
②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미이행)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감증을 수행 -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이행)
③ 연구결과와 공개 확대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미이행)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미이행)
	○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등 6개 과제(세부과제 27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음.

연번	권고 연도	국민권익위원회 미이행 과제 (세부과제 27건)	담당부서
1	2013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또는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등 9건	법률지원담당관
2	2018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등 2건	사회적경제담당관
3	2019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 명시 등 5건	체육정책과
4	2020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 유사 과제 반복 수행 방지를 위한 과제 심의 전 검증 등 4건	시정연구담당관
5	2020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등 6건	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6	2021	◦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자원 관행 개선 -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 1건	인사과

- 그러나 2022년 청렴도 측정 체계 개편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이 청렴도 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되면서,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미이행 평가 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2020.3.7.).
-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서울시는 주요 원인인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출함.

라.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유사·중복 용역 검증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심의회 개최 이전에 학술용역 내용의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을 거쳐 과제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설></div>	제9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u>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u>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이 규정은 연구용역 과제 심의 전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2) 학술용역실명제 신설(안 제14조의2)

- 안 제14조의2는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신설함.

-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계획 수립,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 ▶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등을 관장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는 학술용역 실명제에 대해 내부 지침이 있고 서울계약마당²⁾에서 책임연구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시민 공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음.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과 책임을 명시하여 학술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술

2)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 수의계약 같은 모든 계약정보 공개와 실적증명서 발급까지 5개 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정보, 기업정보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유사·중복 용역 검증절차와 학술용역 실명제를 마련하고 있음.
- 학술용역 추진 시 중복연구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역할 부여를 위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학술용역에 대한 사후 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등의 공개에 대한 세부적 운영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입법적 보완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안 제9조제3항)
- 나.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 (1) 입법예고 (2022. 6. 9.~2022. 6.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

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내부위원 : <u>조직담당관</u>,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p> <p>2. 3. (생략)</p>	<p>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시정연구담당관</u>-----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① ~ ⑤ (생략)</p> <p>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u>조직담당관</u>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p>	<p>제6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시정연구담당관</u> ----- ----- -----.</p>
<p>제9조(의안제출)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u></p>

<신 설>

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것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김대식(02-2133-7827)